

합승한 형법(수정표)

	수정 전	수정 후
p. 216	제 10조 제2항 ~감경할 수 있다.	제 10조 제2항 ~감경한다.
p. 446	제 78조(시효의 기간) 5. 5년 6. 3년	제 78조(시효의 기간) 5. 7년 6. 5년
p. 29 판례	②번 판례	삭제
p. 238 판례	⑥번 판례	삭제

- ⑧ [1] **병역법 제88조 제1항**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.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, 여기에서 **정당한 사유**는 **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**하는 사유이다.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. ★★★
- [2]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. 따라서 **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**라면,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'**정당한 사유**'에 해당한다. ★★★
- [3] **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**이 **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**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**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**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제반 사정에 비추어 **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**으로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'**정당한 사유**'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(대판 2016도10912, 전합). ★